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요건이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 배출가스 검사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검사종류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검사대행기관 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제115조에 따른 첨가제 제조 기준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종류 단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연료제조기준 검사
2. 유해중금속 검사
3. 배출가스 검사

별표 34의2 제1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유종)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1식	휘발유 바이오디젤
2	원자흡광광도계(Aton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3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1ppm 이하 분석 가능	1식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4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휘발유
5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휘발유 경유
6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 (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경유
7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경유
8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경유 바이오디젤
9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경유 바이오디젤

10	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바이오디젤
11	회분시험기(Furnace)	1식	휘발유 (고체첨가제) 바이오디젤
12	전산가시험기(Acid value)	1식	바이오디젤
13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1식	바이오디젤
14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휘발유 (고체첨가제)

별표 34의2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LPG · CNG · 바이오가스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유종)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1식	LPG CNG 바이오가스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5ppm 이하 분석 가능	1식	LPG CNG 바이오가스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LPG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LPG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LPG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LPG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CNG 바이오가스

별표 34의2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34의2 제2호나목1)나) 중 “정하는 검사장비”를 “정하는 검사장비 중 휘발유 · 경유용첨가제 제조기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료
자동차 []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촉매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무실	사무실 전화번호	
		실험실	실험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검사 대상	연료	[] 휘발유, 경유 [] LPG [] 바이오디젤 []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첨가제 용도	[] 휘발유용, 경유용 ([] 연료제조기준, [] 유해중금속, [] 배출가스) [] LPG용		
	촉매제	[] 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제 호

자동차 **[] 연료**
[]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 촉매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실험실 소재지 :

6. 검사대상

- [] 휘발유·경유 [] LPG [] 바이오디젤 [] 천연가스·바이오가스
[] 휘발유·경유용 첨가제 ([] 연료제조기준, [] 유해중금속, [] 배출가스)
[] LPG용 첨가제
[] 자동차촉매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② (생략) <u><신설></u>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제115조에 따른 첨가제 제조기준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종류 단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1. 연료제조기준 검사</u> <u>2. 유해중금속 검사</u> <u>3. 배출가스 검사</u>	
[별표 34의2] <u>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u> (제121조 관련)		<u>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u> (제121조 관련)	
1.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생략) 나. 검사장비 1)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휘발유·경유·바이오디젤((BD100) 검사장비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u>FID, ECD</u>)	1식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3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식	
4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1ppm 이하 분석 가능
5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6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7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8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9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10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11	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12	회분시험기(Furnace)	1식	

순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유종)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1식	휘발유 바이오디젤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photometer)	1식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3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1ppm 이하 분석 가능	1식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4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휘발유
5	증류시험기(Distillation Apparatus)	1식	휘발유 경유
6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또는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1식	경유
7	윤활성시험기(High Frequency Reciprocating Rig)	1식	경유
8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경유 바이오디젤
9	잔류탄소시험기(Carbon Residue Apparatus)	1식	경유 바이오디젤
10	동점도시험기(Viscosity)	1식	바이오디젤
11	회분시험기(Furnace)	1식	휘발유

13	전산가시험기(Acid value)	1식	
14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1식	
15	세탄가측정기(Cetane number)	1식	
16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2) LPG · CNG · 바이오가스 검사장비

순 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FID, ECD, TCD, PFPD)	1식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1식	5ppm 이하 분석 가능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2.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 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생략)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생략)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
장비: 제1호나목 1)에서
정하는 검사장비

3. (생략)

			(고체첨가제) 바이오디젤
12	전산가시험기(Acid value)	1식	바이오디젤
13	산화안정도시험기(Oxidation stability)	1식	바이오디젤
14	별표 33의 제조기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휘발유 (고체첨가제)

2) LPG · CNG · 바이오가스 검사장비

순 번	검사장비	수량	비고(유종)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1식	LPG CNG 바이오가스
2	황함량분석기(Sulfur Analyzer) - 5ppm 이하 분석 가능	1식	LPG CNG 바이오가스
3	증기압시험기(Vapor Pressure Tester)	1식	LPG
4	밀도시험기(Density Meter)	1식	LPG
5	동판부식시험기(Copper Strip Corrosion Apparatus)	1식	LPG
6	증발잔류물시험기(Residual Matter Tester)	1식	LPG
7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1식	CNG 바이오가스

2.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현행과 같음)

2) 검사원의 수

검사원은 4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원 중 2명 이상은 배출가스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장비

가) (현행과 같음)

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장비: 제1호
나목 1)에서 정하는 검사장비
중 휘발유·경유용 첨가제 제
조기준 검사를 수행할 수 있
는 장비

3. (현행과 같음)